

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  
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略称)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

前文目

次

	昭和四十一年六月二十二日	昭和四十一年十二月十一日	昭和四十一年十二月十四日	昭和四十一年十二月十四日	昭和四十一年十二月十八日	昭和四十一年十二月十八日	東京で署名	国会承認	批准の閣議決定	批准書認証	ソウルで批准書交換	公布及び効力発生の告示 (昭和四十年条約第二八号)	効力発生
第一条 前文													
第二条 次													
第三条 次													
第四条 次													
第五条 次													
第六条 次													
末文													

ページ

#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

(二)

## ○合意された議事録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目 次

ページ  
三四〇

韓国国籍の証明等	三四五
公館の定義、退去強制	三四一
永住者の教育、生活保護、国民健康保険、財産携行及び送金	三四二
日本側代表発言	三四五

## ○討議の記録

目 次

ページ  
三四五

兵役又は徵用による一時的不在の取扱い	三四五
永住許可申請に要する書類	三四五
教育に関する措置	三四五
国民健康保険に関する措置	三四六
外国人の財産取得に関する政令	三四六
永住者の再入国	三四六
韓国側代表発言	三四六
退去強制者の引取り	三四七
国民健康保険の早期適用	三四七
在日韓国民の生活安定及び貧困者救済のための措置	三四七

(参考)

○大臣声明

目 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協定の署名に際して行なわれた日本国法務大臣声明

三四八

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  
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  
の協定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多年の間日本国に居住してゐる大韓民国国民が日本  
国の社会と特別な関係を有するに至つてゐることを考  
慮し、

これらの大韓民国国民が日本国の社会秩序の下で安  
定した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両  
国間及び両国民間の友好関係の増進に寄与することを  
認めて、

次のとおり協定した。

### 第一条

永住資格  
者の範囲  
及び申請

1 日本国政府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大韓民国  
国民が、この協定の実施のため日本国政府の定める  
手続に従じ、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五年以内  
に永住許可の申請をしたときは、日本国で永住する  
ことを許可する。

(a) 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前から申請の時  
まで引き続き日本国に居住してゐる者

(b) (a)に該当する者の直系卑属として千九百四十五  
年八月十六日以後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五  
年以内に日本国で出生し、その後申請の時まで引  
き続き日本国に居住してゐる者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일본국과 대한 민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들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 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번개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다.

### 第一条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하게 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포함되는 자의 친가·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였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規定

2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規定	2 日本国政府は、1の規定に従じて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者の子としてのんの過度の効力発生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た後に日本国で出生した大韓民国国民が、この協定の実施のため日本国政府の定めの手続に従う、その出生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永住許可の申請をしたときは、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する。
3 1(b)に該当する者で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四年十箇月を経過した後に出生したものの永住許可の申請期限は、1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出生の日から六十日までとする。	3 1(b)に該当する者で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四年十箇月を経過した後に出生したものの永住許可の申請期限は、1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出生の日から六十日までとする。
4 前記の申請及び許可については、手数料は、徵収されない。	4 前記の申請及び許可については、手数料は、徵収されない。

第11条

1 日本国政府は、第一條の規定に従じて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者の直系卑属として日本国で出生した大韓民国国民の日本国における居住についてでは、大韓民国政府の要請があれば、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一十五年を経過するまでは協議を行なうことと同意する。	1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주민으로서 일본국에 출생한 자의 자녀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그의 출생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의 신청 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엄주를 허가한다.
2 1の協議に当たつては、この協定の基礎となつてくる精神及び目的が尊重されるものとする。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 第三条

第一条の規定に従い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ゐる大韓民国国民は、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以後の行為により次のこと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を除くほか、日本国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な。

(a) 日本国において内乱に関する罪又は外患に関する罪により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及び内乱に附和隨行したなど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を除く。）

(b) 日本国において国交に関する罪により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及び外国の元首、外交使節又はその公館に対する犯罪行為により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日本国の外交上の重大な利益を害した者

(c) 営利の目的をもつて麻薬類の取締りに関する日本

国の法令に違反して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者（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を除く。）及び麻薬類の取締りに関する日本国の法令に違反して三回（ただし、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の前の行為により三回以上刑に処せられた者につく

### 四 三 次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을 발생할 때의 해외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 해외의 회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련된 자 또는 외환에 관한 자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벌에 처하여 예진 자

(집행 우예의 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 험한 것으로 인하여 항에 처하여 예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고에 관련된 자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벌에 처하여 예진 자, 또는 외국의 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벌에 해당되는 경우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벌에 처하여 예진 자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미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벌에 처하여 예진 자 (집행 우예의 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미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을 발생한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  
では一回) 以上刑に処せられた者

(d) 日本国の法令に違反して無期又は七年を以てゐる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者

#### 第四条

日本国政府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以下の考慮を払うものとする。

(a) 第一条の規定に従じ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に対する日本国における教育、生活保護及び国民健康保険に関する事項

(b) 第一条の規定に従じ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同条の規定に従じ永住許可の申請をする資格を有してくる者を含む。）が日本国で永住する意思を放棄して大韓民国に帰国する場合における財産の携行及び資金の大韓民国への送金に関する事項

전의 헌법에 의하여 그로 이상 범위에 처하여진 자이  
디아이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가벌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징고에 처하여진 자

####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어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의한 이사의  
교육·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

(b)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어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여가의 신장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  
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표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유형 및 자금의 대한민국의  
송금에 관한 사항

#### 第五条

第一条の規定に従じ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いる大韓民国国民は、出入国及び居住を含むすべての事項に関して、この協定で特に定める場合を除くほ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어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

か、すべての外国人に同様に適用される日本国の法令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確認される。

批  
准  
及  
び

末

文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ぬ。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の後三十日で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一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一通を作成した。

에게 등등의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벙는 것이 확인된다.

第六条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그玩意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그玩意나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로는, 가치의 전부로부여  
한국어로 본서 2종을 작성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요쿄에서 등등의 정본인 일본어  
한국어로 본서 2종을 작성하였다.

日本国のために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 悅三郎

高杉 晋一

대한민국을 위하여

李 東 元

金 東 祚

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  
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  
の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

日本国政府代表及び大韓民国政府代表は、本日署名  
された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  
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に関する次  
の了解に到達した。

第一条に關し、

1 同条 1 又は 2 の規定に従じ永住許可の申請をす  
る者が大韓民国の国籍を有してゐることを證明す  
るため、

(i) 申請をする者は、旅券若しくはこれに代わる  
證明書を提示するか、又は大韓民国の国籍を有  
してゐる旨の陳述書を提出するものとする。

(ii) 大韓民国政府の権限のある当局は、日本国政  
府の権限のある当局が文書により照会をした場  
合には、文書により回答するものとする。

2 同条 1(b)の適用上「(a)に該当する者」には、千  
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前から死亡の時まで引

韓國國等  
の證明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원의 의사록  
일본국 정부 대표 및 대한 민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에  
도달하였다.

제 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외국의 신장을  
하는 자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i) 신장을 하는 자는 여전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동의 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ii) 대한 민국 정부의 관할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관할 있는 당국이 문서로 보관할 경우  
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립시 가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を続々日本国に居住してゐた大韓民国国民を仰むるものとする。

第三条に關し。

- 1 同条(b)の適用上「その公館」とは、所有者のいかんを問わず、大使館若しくは公使館として使用されてゐる建物又はその一部及びこれに附屬する土地（外交使節の住居であるこれらのものを含む）をさう。
- 2 日本国政府は、同条(c)又は(d)に該当する者の日本国からの退去を強制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人道的見地からその者の家族構成その他の事情にてて考慮を払う。
- 3 大韓民国政府は、同条の規定により日本国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ることとなつた者につき、「日本国政府の要請に従ふ、その者の引取りにつけて協力する。」
- 4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條の規定に従ふ永住許可の申請をする資格を有してゐる者に關しては、その者の永住が許可された場合には協定第二條(a)なほし(b)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ほか日本国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なくことにかんがみ、その者につけて退去強制手続が開始した場合におこり、

제 3조에 관하여。

-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명의를 물려받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이하와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뇌개를 청구하였거나 일본국에는 인도적 가치에서 그 자의 가족 구성 및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한다.

- 3 대한 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뇌개를 청구하였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주 국가의 신장을 위하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 자의 양주 국가에 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 3조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의 뇌개를 청구하지 아니할에 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뇌개 청구에 수속이

び産保国活教永  
送携險民保育住  
金行、健護、者  
及財康、生の

第四条に關し、

1 日本国政府は、法令に従じ、協定第一条の規定

に従じ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が、日本国の公の小学校又は中学校へ入学す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は、その入学が認められるよう必要と認める措置を執り、及び日本国の中学校を卒業した場合には、日本国の上級学校への入学資格を認める。

2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条の規定に従じ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に対する生活保護については当分の間従前どおりとする。

(i) その者が永住許可の申請をしてくるときには、その許否が決定するまでの間、また、  
(ii) その者が永住許可の申請をしてこなしたときに、その申請をするかしないかを確認し、申請をしたときは、その許否が決定するまでの間、その者の強制送還を差し控える方針である。

(1) 그자가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일부에 대한 그 국가의 기관 또는 그 국가 일부 국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한 그 국가에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국가

여부가 결정될 때 마지막의 기관

그자의 강제송환을 거제한 법정이다.

제 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률에 따로,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연수가 증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민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への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연수가 증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정 보호에 대해서는 일본국 종전과 같이 한다.

3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条の規定に従じて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を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とするため必要と認める措置を執る。

4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条の規定に従じて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てくる大韓民国国民（永住許可の申請をする資格を有してくる者を含む。）が日本国で永住する意思を放棄して大韓民国に帰国する場合には、原則として、その者の所有するすべての財産及び資金を携行し又は送金するなどを認める。このため、

(i) 日本国政府は、その者の所有する財産の携行に關しては、法令の範囲内で、その携帯品、引越荷物及び職業用具の携行を認めるほか、輸出の承認に当たりできる限りの考慮を払つものとする。

(ii) 日本国政府は、その者の所有する資金の携行又は送金に關しては、法令の範囲内で、一世帯当たり一万合衆国ドルまでを帰国時に、及びそれをこえる部分については実情に応じ、携行し又は送金することを認めるものとする。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입주가 어려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입주가 어려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주자가 신장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험주한 의사를 표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유형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i) 일본국 정부는 그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유형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유대품,

이상급 및 취업 용구의 유형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 기관한 한의 고지를 한다.

(ii) 일본국 정부는 그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유형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1세대 당 1만

아메리카 합중국 볼 가치를 지급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유형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三四四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 合意された議事録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一日に東京で

1965년 6월 21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동경에서 합의된 회의록

E · S ·  
T · W · L ·

E · S ·  
T · W · L ·

討議の記録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協定の締結のための交渉に際し、日韓双方よりそれぞれ次の発言がなされた。

日本側代表  
表発言代

徴兵役又不<sup>一</sup>在<sup>二</sup>時の<sup>三</sup>取<sup>四</sup>的<sup>五</sup>よ<sup>六</sup>は<sup>七</sup>可<sup>八</sup>要<sup>九</sup>書<sup>十</sup>類<sup>十一</sup>に<sup>十二</sup>許<sup>十三</sup>永<sup>十四</sup>住<sup>十五</sup>申<sup>十六</sup>請<sup>十七</sup>に<sup>十八</sup>可<sup>十九</sup>す<sup>二十</sup>

日本側代表

(a)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条1(a)の適用に当たつては、兵役又は徴用により日本国から離れた時から復員計画に従つて帰還するまでの間を日本国に引き続き居住していくものとして取り扱う方針である。

(b) 協定第一条の規定に従じ永住許可の申請をする者が提出又は提示するものには、次のものが含まれることとする。

- (i) 永住許可申請書
- (ii) 写真
- (iii) 家族関係及び日本国における居住経歴に関する陳述書

教育に關する措置

- (c)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中協定第四条に<sup>一</sup>関する部分の1でいう「必要と認める措置」と

주의 가족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일상 악수으로부터 고마움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론적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 1(a)의 적용에 있어는 법적 대우 또는 지위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 거주에 따라 차별을 떠나지 않아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 법칙이다.

(b)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여가의 신장을 하는 자가 계약 또는 계약하는 것에는 마음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관련 진술서

- (i) 외국인 등록 증명서
- (ii) 협정에 따른 협의 의사록 중 협정 제 4조의 관련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지만 인정하는 조치"라 함은

は、文部省が現行法令に従つて行なう指導、助言及び勧告をう。

国民健  
保険に關  
する措置

財産人  
の取  
得の  
令

再入  
國の  
者

韓國側  
代表  
表發言

(d)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中協定第四条に関する部分の3でいう「必要と認める措置」には、厚生省令の改正が含まれる。もつとも、そのような措置を執るためには、相当な準備期間が必要であるので、日本国政府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日の属する会計年度の次の会計年度の初日からそれらの者が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となるようとするものとする。

(e) 外国人の財産取得に関する政令に基づく告示において、同政令の適用除外国として大韓民国を指定しているが、日本国政府は、協定の効力発生に際してこれを削除する意図はない。

(f) 日本国政府は、協定第一条の規定に従い日本国で永住することを許可される大韓民国国民が出国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再入国許可の申請をしたときは、法令の範囲内で、できる限り好意的に取り計らう方針である。

문부성이 한일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기도, 조언 및 권고를  
마련한다.  
(d) 협정에 대한 학의 의사록 중 협정 제 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는 우상당법의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속이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고시에  
있어서, 동 규정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되어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 여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그의 신청을 취급할 방침이다.

退去被強制者の引取り  
期保険の早健康  
国民健康保険の早健康  
在日韓人の貧困者救済のための措置  
安民の生のための措置

(a)

協定の効力発生の後は、出入国管理に関する日本の法令の規定により日本国からの退去を強制されることとなつた大韓民国国民の引取りについて、大韓民国政府は、日本国政府に協力する方針である。

(b)

大韓民国政府は、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中協定第四条に関する部分の3で「必要と認める措置」が執られるためには相当な準備期間が必要であることを認めるが、そのような措置が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執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る。

(c)

大韓民国政府は、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生活を安定させ、及び貧困者を救済するため、日本国政府の要請に応じてある限り同政府に協力するための措置を同政府とともに検討する用意がある。

M · Y  
K · H · L ·

(a)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는 출입국 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구경에 의거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회거를 위해 당국에 대한 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조치이다.

(b)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대한 협의의 사목증에 따로 관할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니고 인정하는 조치"가 최적위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바이나 그 외 같은 조치가 가능한 한 조속히 취하여 시행을 기대한다.

(c)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민족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정부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동 정부와 법률에 걸도록 용의가 있다.

M · Y  
K · H · L ·

(参考)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協定  
の署名に際して行なわれた日本国法務大臣声明)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日韓協定の調印に当たり、戦後入国者の取扱いに關し、次のとおり声明する。

終戦以前から日本国に在留していた大韓民国国民であつても、終戦後平和条約発効までの期間に一時韓国に帰国したことのあるものは、「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協定」第一条

の対象とはならないが、これらの人々については、現在まですでに相当長期にわたり本邦に生活の根拠を築いている事情をも考慮し、協定発効後は我が国におけるその在留を安定させるため好意的な取扱いをすることをとし、本大臣において特別に在留を許可するとともに、更に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在留状況等を勘案して、可能な限り入国管理法令による永住を許可する方針をとることとした。

右に伴い前段に該当しない大韓民国国民である戦後入国者についても、平和条約発効日以前から本邦に在留していたことが確証される場合には、情状によりこれに準ずる措置を講ずることといたしたい。

(参考)

この協定は、多年の間日本国に居住している大韓民国国民及びその特定の直系卑属に、日本国で永住する資格を認め、かつ、その退去強制事由及び教育、生活保護等の国内処遇について定めるものである。